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업무를 협조하기로 하여 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법원 연체형 조정의 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구성원을 민사조정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2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의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제1조 기재와 같이 위촉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배정된 조정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조정회의실 제공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3조(세미나, 교육 협력과 정보 공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관 연수, 조정위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제4조(조정 수당의 지급)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본 약정에 따라 조정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에게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조사비용, 그 밖의 여비, 일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비용 등의 부담)

본 약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비용이나 경비 등의 부담에 관하여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한다.

부 칙

1. 본 약정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유효기간 2년으로 한다.
2. 본 약정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기관으로부터 해지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본 약정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5. 13.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기택

